

『구미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09년 8월 24일

나. 발 의 자

이갑선 의원, 박세채 의원, 윤서규 의원, 한정우 의원,
구자근 의원, 허 복 의원, 김태근 의원, 우진석 의원,
김도문 의원, 김영호 의원, 석호진 의원

다. 회부일자 : 2009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09년 9월 7일

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이갑선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여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방법 및 지원의 제한 규정 마련(안 제3조, 안 제4조)
-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·구매활동·기술력 향상·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을 천명함(안 제5조)
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우대의무에 따라 여성기업 자금지원 우대를 규정함(안 제6조)
-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배려를 규정함(안 제7조)
-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(안 제10조, 안 제11조)
-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12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성 근

○ 본 제정 조례안은

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” 라는 법률 근거에 의하여 마련된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여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확인방법 및 지원의 제한 규정 마련 (안 제3조, 안 제4조)
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우대의무에 따라 여성기업 자금지원 우대를 규정함(안 제6조)
-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(안 제10조, 안 제11조)
-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여성경제인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규정함(안 제12조)

○ 검토 결과

- 구미시 관내에 소재하는 여성기업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정·재정적 지원근거 마련과 여성친화적인 유망직종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의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우대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

- “기업하기 좋은 도시” 건설 및 기업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여성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